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 10. 19 선고 2022가단226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0. 5.

판 결 선 고 2022. 10. 19.

주 문

1.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21. 8. 1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8,037,57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8,037,5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819937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8. 3. 16.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3,070,000원과 그 중 2,932,043원에 대하여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8. 4. 5.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이 2021. 8. 17.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배우자 E, 자녀 C, F, G, H,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8. 27. 접수 제371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57,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I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21. 9. 23.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취소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처분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당시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계약의 일부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원고는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이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라면서 반환을 구하는 가액만큼의 일부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가액배상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경우는 아니다),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8,037,57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원상회복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등).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위와 같이 일부 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사해행위 전에 마쳐져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말소된 경우가 아니고, 채무자만 피고로 변경되어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저당권이 붙은 채로 원물을 반환(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하더라도 ‘공동담보가 아니었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야기하지 않으므로, 이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배상을 명해야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원물반환, 즉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 계약 일부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 계약 전부의 취소와 원물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전부 청구(大)는 일부 청구(小)를 포함하나, 일부 청구(小)는 전부 청구(大)를 포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으로서 원고가 가액배상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원물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원상회복 청구는 배척할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민영